

#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80
----------	-----

제출년월일 : 1999. 10. 11.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 이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에 국민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 골자

- 가.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규정 중 자치단체의 처리의무가 없는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업무를 삭제함.(안 제6조)
- 나. 규제사무완화 규정에 따라 국민의 생활불편을 초래한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삭제함. (안 제4조, 안 제13조3호, 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6조)
- 다. 과태료의 부과금액을 영 별표 8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있어 이를 따르며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함.(안 제17조, 별표 5 삭제).

##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법률 제5864호 : '99.2.8)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영 제16508호 : '99.8.6)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부령 제83호 : '99.8.9)
- 행정규제 완화 및 자치법규 정비

## 4. 본문 : 붙임참조

##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법”으로 하고, 동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의 제목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을 “분뇨의 수집·운반 및처리의 대행”으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2항중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을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으로 한다.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함에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및 분뇨 등 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여 처리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신고”를 “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등의 신고”로 하고 본문중 “오수처리시설”을 각각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4장의 제목중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중 “오수처리시설등”을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로 한다.

제13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항을 삭제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청소오니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 영업자의 분뇨수집·청소오니의 운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삭제한다.

제24조 본문중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4의 “오수처리시설”을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중 “2. 도시계획확인원 1부”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u>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p> <p>2. <u>“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말한다</u></p> <p>3. <u>“가축”이라 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u></p> <p>4. ~ 5. (생략)</p>	<p>제2조(정의) -----</p> <p>-----</p> <p>1. <u>법</u>-----</p> <p>-----</p> <p>-----</p> <p>2. <u>&lt;삭제&gt;</u></p> <p>3. <u>&lt;삭제&gt;</u></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3조(군수의 책무) <u>군수는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3조 <u>&lt;삭제&gt;</u></p>
<p>제4조(오수처리시설등의 운영·관리) ①<u>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법 제2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설치된 오수처리시</u></p>	<p>제4조 <u>&lt;삭제&gt;</u></p>

현행	개정안
<p>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p> <p>②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정상가동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p> <p>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크럼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중오니를 투입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p> <p>3.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크럼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p>	

현행	개정안
<p>는 종오니를 투입해야 한다</p> <p>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 업무에 있어서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p> <p>1. ~ 5. (생략)</p> <p>③ (생략)</p>	<p>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집·운반 및 처리 업무를 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수집·운반업 및 분뇨등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에게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 -----</p> <p>1. ~ 5.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8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신</p>	<p>제8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등의</p>

현행	개정안
<p>고) <u>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u>를 수행하는 자는 <u>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이 용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등을 하지 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u></p>	<p>신고) <u>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u></p>
<p>제10조(허가절차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u>도시계획 확인원 1부</u></p> <p>② ~ ⑤ (생략)</p> <p>제4장 분뇨처리 및 <u>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u></p>	<p>제10조(허가절차등) ①-----</p> <p>1. (현행과 같음)</p> <p>2. &lt;삭제&gt;</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4장 분뇨처리 및 <u>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수수료</u></p>
<p>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p>	<p>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p>

현행	개정안
<p>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 <u>오수처리시설</u>등의 청소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p> <p>1. (생략)</p> <p>2. <u>오수처리시설</u>의 청소 수수료 <u>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u>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 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정화조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p> <p>3. (생략)</p> <p>② (생략)</p> <p>제13조(분뇨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p> <p><u>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u></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u>오수처리시설</u> 등의----- <u>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u></p> <p>-----</p> <p>-----</p> <p>-----</p> <p>-----</p> <p>-----</p> <p>-----</p> <p>-----</p> <p>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분뇨처리장 사용료 감면)</p> <p>-----</p> <p>-----</p> <p>-----</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3. &lt;삭제&gt;</p>
<p>제15조(분뇨등관련영업)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p> <p>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15조제1항 &lt;삭제&gt;</p> <p>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청소오니 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청소오니의 운반능력을 고려해야 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농률향상과</p>	<p>제16조 &lt;삭제&gt;</p>

현행	개정안
<p>군민편의 도모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li> <li>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적정등에 관한 사항</li> <li>3.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수반되는 업무</li> </ol>	
<p>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p>	제17조 <삭제>
<p>제2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오니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를 따라 처리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p>	<p>제24조(행정위탁) ----- ----- --오수처리시설 등----- ----- ----- -----</p>

현행	개정안
<p>&lt;별표 4&gt; <u>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u></p> <p>&lt;별표 5&gt; <u>과태료 부과기준</u></p> <p>&lt;별지 제1호서식&gt;</p> <p>구비서류 : 1. (생략)</p> <p>2. <u>도시계획확인원</u></p>	<p>&lt;별표 4&gt; <u>오수처리시설 등</u>-----</p> <p>&lt;별표 5&gt; &lt;삭제&gt;</p> <p>&lt;별지 제1호서식&gt;</p> <p>구비서류 : 1. (현행과 같음)</p> <p>2. &lt;삭제&gt;</p>